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226호

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광주·전남)』과 관련하여 광주 에너지 특화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광주테크노파크 GWANGJU TECHNOPARK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광주·전남)

☐ **사업기간**: 2024. 6. ~ 2024. 12. (당해연도)

☐ **주관/참여**: (재)전남테크노파크/(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에너지특화기업 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위치하고,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이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

☐ **광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현황**

구분	세부지역		단지 내 역할	지정면적	비고
코어지구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	에너지공기업 연계	0.23㎢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0.35㎢	
		광주 평동일반산단1,2,3차		4.00㎢	
연계지구	연계1	첨단과학산단(1~3단계)	에너지효율향상 서비스 실증	3.69㎢	
		빛그린국가산단(광주·전남)		2.68㎢	

☐ **에너지특화기업 자격요건**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기업(본점, 지점, 공장 등)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혜택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혜택 】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특별법 제15조)

○ 연구개발의 지원(특별법 제16조) - 산업부 R&D선정평가 시 가점

○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시행령 제15조)

【 2024년 혜택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컨설팅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컨설팅 지원기간:** 전문가 매칭 후 ~ 2024. 11. 30.(토) 까지

※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광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규모
전문가 컨설팅	o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o 전문가별 1일 2시간 이내/ 기업 방문기준 2회(필요시 추가 1회 가능)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5社 내외

※ 광주테크노파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컨설팅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기업부담금 없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 ~ 2024. 10. 18.(금)

※ 선착순 마감(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E-mail) 접수**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	최효진 선임	hj5989@gjtp.or.kr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서식 여부	필수/선택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호	**필수**
2	참여의사 및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2호	**필수**
3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자체점검표	서식 6호	**필수**
4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기업제출	**필수**
5	재무제표 ('21~'23년) 각 1부	기업제출	**필수**

※ 제출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필히 날인

4 추진일정

추진	주요내용	일 정
모집공고 및 접수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에너지밸리 기업지원 포털 내 공고 - 신청서 및 증빙서류 E-mail 접수	공고일 ~ 10. 18
⇩		
전문가 매칭	▸ 기업-전문가 1:1 매칭	10. 末
⇩		
컨설팅 진행	▸ 매칭 후 기본 2회(필요시 1회 추가 가능) ▸ 기업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진행	11. 末
⇩		
결과보고서 제출	▸ 회차별 컨설팅 일지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서류(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11. 末

※ 상기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8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